

서울특별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명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금천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최기찬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지난 24년 11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이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도록 「빙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었습니다.

이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준주거지역에서 시행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 시, 적

용계수를 신설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아무쪼록,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
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